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 피해 지원 범위에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을 추가〉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6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2.
3. 회부연월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u>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u>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일정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음.

[피해 시설의 복구 등 국가·지자체의 지원 유형(법 제66조제3항 각호)]

-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위 지원 사항의 기준 등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재난 유형(자연재난/사회재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지자체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율 형식]

	특별재난지역 선포 O	특별재난지역 선포 X
자연재난	대통령령	대통령령
사회재난	대통령령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제조업 등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재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유형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운영하던 중 재난으로 인해 해당 시설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장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이 현행 법령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장 시설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사업장 시설에 대해 별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장시설도 사업장 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¹⁾.

둘째, 개정안과 같이 공장시설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지원 대상으로 상정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재난 피해로 인한 공장시설의 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 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바. (생략)

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아.-자. (생략)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바. (생략)

사.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지원

1)-4) (생략) 농경지 및 염전 복구

6)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지원을 규정한 취지가 기업의 경영안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 하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현행법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장 시설은 공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행법령을 통해서도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비 뿐만 아니라 경영안정 지원도 가능하며, 개정안과 같이 지원 대상을 공장시설로 규정할 경우 대기업의 공장도 지원하게 되므로 현행 생계 구호 및 사회적 구호 차원의 복구지원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